

공고 제 1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06일

호명면장



직권조치사항
직권조치일자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분	이 *분 1922-05-21	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	직권말소 2023-11-06